



2019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 학교법인 성지학원

---

정관

정관시행세칙

연혁

---



# I. 정관

제정 : 1959. 12. 24.

개정 : 1964. 8. 24, 1967. 12. 7, 1974. 7. 31, 1975. 10. 20, 1976. 1. 20, 1977. 1. 8, 1977. 8. 26, 1978. 7. 10, 1979. 1. 25, 1979. 2. 29, 1981. 11. 21, 1982. 3. 1, 1983. 11. 9, 1984. 6. 8, 1985. 2. 23, 1986. 6. 12, 1987. 11. 17, 1990. 5. 7, 1990. 12. 7, 1991. 4. 22, 1992. 3. 1, 1997. 11. 21, 1998. 11. 13, 1999. 7. 16, 2000. 8. 4, 2001. 2. 9, 2001. 6. 28, 2002. 3. 22, 2002. 7. 25, 2003. 5. 29, 2004. 3. 11, 2005. 5. 10, 2005. 9. 29, 2006. 6. 26, 2006. 8. 4, 2006. 11. 21, 2007. 3. 5, 2007. 9. 10, 2008. 4. 28, 2008. 12. 22, 2009. 3. 9, 2009. 9. 16, 2010. 2. 24, 2010. 4. 21, 2010. 11. 5, 2011. 4. 27, 2011. 8. 5, 2012. 2. 2, 2012. 2. 27, 2012. 8. 21, 2012. 9. 21, 2012. 12. 18, 2013. 2. 15, 2013. 4. 25, 2013. 6. 25, 2013. 8. 27, 2013. 11. 27, 2014. 2. 27, 2014. 3. 18, 2014. 4. 24, 2014. 7. 24, 2014. 11. 21, 2014. 12. 30, 2015. 6. 26, 2015. 8. 20, 2015. 9. 22, 2015. 10. 23, 2015. 12. 18, 2016. 2. 23, 2016. 3. 30, 2016. 7. 22, 2016. 8. 25, 2017. 2. 23, 2017. 6. 22, 2017. 9. 22, 2018. 08. 24, 2019. 2. 13, 2019. 7. 1, 2019. 9. 1, 2019. 10. 18.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 교육이념과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성지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 경영한다.

1. 부산외국어대학교
2. 성지고등학교(개정 2009.09.16)

제4조(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485번길 65에 둔다.(개정 2014.03.18)

제5조(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로 변경하고 이를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09.16, 2012.09.21)

## 제2장 자산과 회계

### 제1절 자산

제6조(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개정 2009.09.16)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11.21)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과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제2절 회계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학교의 장이 편성하되 대학평의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의, 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장이 집행하며,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이사장이 편성하여 학교법인 이사회가 심의 의결하고 이사장이 집행한다.(개정 2006.11.21)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11.21)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임시이사가 파견될 경우 최소한의 이사회 운영경비 및 사무직원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제1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개정 2016.02.23)

제12조의 2(예산·결산의 제출 및 공개) ① 제9조 제1항의 회계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되,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까지,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학교운영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개정 2006.11.21)

### 제 3 절 (제13조 내지 제 17조) 삭제

제18조 내지 제21조(삭제)

## 제 3 장 기 관

### 제 1 절 임 원

제2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8인
2. 감사 2인

제22조의2(상근임원) ① 법인의 임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이 상근할 수 있고, 상근하는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8. 04.28)

1. 이사장(신설 2008.04.28)
2. 상임이사(신설 2008.04.28)

② 보수의 지급에 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사회에서 정한다.(신설 2008.04.28.)

제23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이사는 중임할 수 있고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개정 2016. 02.23)

1. 이사 4년(개정 2006.11.21)
2. 감사 3년(개정 2006.11.21,2016.02.23)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4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09. 09.16)

-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한다.
-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4조의 2(개방이사 추천위원회) ① 대학평의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의사를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하여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9.09.16, 2013.06. 25)

- ②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09.16)

1. 대학평의원회 : 3인
2. 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 2인

- ③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개정 2009.09.16)

- ④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9.09.16)

제24조의 3(개방이사의 선임) ① 이사장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는 임기만료 3개월 전, 재직감사는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추천위원회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9.09.16)

- ② 이사장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의 의견을 골고루 반영하여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개정 2009.09.16)

- ③ 이사장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요청 할 때 다음 각호의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09.09.16)

1. 기독교 교인(집사이상)으로서 법인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
2. 사립학교법 제22조의 임원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④ 삭제

제24조의 4(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06.11.21)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소승인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사립학교법 제54조의2 규정에 의한 해임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사립학교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4급 이상의 교육행정 공무원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25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반수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 ② 이사회에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6.11.21)

- ③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 ⑤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 ⑥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선임한다. 다만,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9.09. 16)

-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6.11.21)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자

제26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하여 취임한다.

-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③ 이사장은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하지 못한다.

제27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한다.(개정 2016. 02.23)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제28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이사장이 결위 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2016.02.23)

제29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와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30조(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개정 2009.09.16)

②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9.09.16)

③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9.09.16)

## 제 2 절 이사회

제31조(이사회 구성 및 기능 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개정 2014.07.24)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개정 2016.02.23)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2조(이사회 개최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한다.(개정 2006.11.21)

② 이사회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6.11.21)

제33조(이사회 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4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5조(이사회소집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 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이상 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 한 때
2. 제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 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 소집을 기피할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6.11.21)

제35조의 2(이사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9.09.16)

-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09.09.16)

### 제 3 절 대학평의위원회

제35조의 3(대학평의위원회의 설치) 대학교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위원회(이하 “평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09.09.16)

제35조의 4(대학평의위원회의 조직) ① 평의위원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6.11.21)

1. 교원 5명
2. 직원 2명
3. 학생 2명
4.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2명

- ② 평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구성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6. 11.21)

- ③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평의원에 임명된 보직교수 또는 학교법인 임원은 평의원의 임기 중에 보직교수 또는 학교법인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해임된 때에는 평의원에서 해촉되며, 보궐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35조의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개정 2006.11.21)

- ④ 대학평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평의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06. 11.21.)

제35조의 5(의장 등) ① 평의위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위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 ③ 의장은 평의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35조의 6(소집) 평의위원회는 이사장, 총장 또는 재직 평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한다.

제35조의 7(평의위원회의 기능) 평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 (개정 2009.09.16)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현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제 4 절 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제35조의 8(학교운영위원회) ①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학교 운영에 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고등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법인 이사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그 설치 취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 지도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건학이념 구현에 저해되는 운영을 하거나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학교장을 통해 운영위원회의 자문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연령, 직급, 성별 등을 고려하여 2배수 이내로 추천한 교원 중 학교장이 위촉한다.(개정 2006.11.21)

④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35조의 9(학교교권보호위원회) ①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거하여 고등학교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02.23]

## 제5절 사학윤리위원회

제35조의10(사학윤리강령 준수) ① 이 법인은 법인 및 학교운영에 있어 “사학윤리강령”(별표4)을 준수한다.

② 이 법인 및 경영하는 학교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사학윤리위원회 활동에 협조하고 그 결정사항을 준수한다.

## 제4장 수익사업

제36조(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 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임대업(토지, 기계)
2. 조립업
3. 서비스업
4. 교육사업 (신설 2013.11.27)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 (신설 2013.11.27)

제37조(수익사업의 명칭) 제36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부를 둔다.

1. 성지학원 수익사업부
2. 외대골프아카데미

제38조(수익사업체의 주소) 수익사업체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485번길 65에 둔다.(신설 2013.11.27)

제39조(관리인) ① 제37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 복무,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 제5장 해산

제40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09.16)

제41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개정 2009.09.16, 2016.02.23)

제42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을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09.09.16)

## 제 6 장 교직원

### 제 1 절 교원

#### 제 1 관 임용(개정 2016.02.23.)

제43조(임용) ①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그 임기는 대학교의 총장은 4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으며, 고등학교의 장은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대학교의 총장은 교원의 정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임기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06.11.21,2013.08.27,2016.02.23)

② 학교장 이외의 교원은 고등학교는 당해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며, 대학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의 대학교 강사 및 고등교육법 제17조에 규정된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 승인을 거쳐 총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02.27.,2014.02.27.,2014.11.21.,2016.02.23.,2019.7.1.)

#### 1. 근무기간

가.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3년의 계약기간으로 정하는 기간

나. 부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다. 조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라. (삭제 2012.08.21)

마. (삭제 2012.02.27)

2. 급여 : 정관 제49조로 정하는 보수

3.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 교수시간, 연구업적 및 성과, 학생지도 등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4.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③ 대학교의 부총장, 교목실장, 실·처장, 본부장, 대학원장, 학장 등의 보직은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총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장은 지체 없이 이를 이사장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09.10,2013.06.25,2014.07.24)

④ 제2항의 교원을 신규 채용함에 있어서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마감일 15일 전까지 채용분야·채용인원·지원자격·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 정보통신망, 학교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09.16,2014.02.27)

⑤ 공개전형으로 채용하는 교원임용에 있어서는 당해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로 제한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02.23)

⑦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를 준용한다.(신설 2016.02.23)

제43조의 2(기간제교원) ① 교원이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에는 그 기간 중 당해 교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임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기간제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③ 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 임용은 당해 학교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단 6개월 미만의 기간제 교사 임용 사항은 학교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2.02.27)

제43조의 3(의원면직의 제한)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과면·해임·강등·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정관 제59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중인 때

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 ②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교원이 제1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02.23]

## 제2관 신분보장

제44조(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시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교육기관을 말한다)에 임시로 고용된 때
7.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개정 2017.02.23)
- 7의2. 만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
8. 관할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1.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12.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때
13.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신설 2017.02.23)

[전문개정 2016.02.23]

제45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09.16)

1. 제4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6.02.23)
2. 제44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4. 제4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제44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4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개정 2016.02.23)
- 6의2. 제44조 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신설 2016.02.23)
7. 제44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제44조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44조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6.02.23)
10. 제44조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11. 제44조 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국회의원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12. 제44조 제1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신설 2017.02.23)

제46조(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해야 한다.

- ③ 제44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7조(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4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보수는 봉급의 7할(연봉제의 경우는 연봉월액의 39퍼센트)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보수는 봉급의 8할(연봉제의 경우는 연봉월액의 45퍼센트)을 지급하며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지급한다.(개정 2009.09.16,2014.02.27)

- ② 제4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보수는 봉급의 반액(연봉제의 경우는 연봉월액의 28퍼센트)을 지급한다.(개정 2009.09.16,2014.02.27,2016.02.23)

- ③ 제44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09.16,2014.02.27)

제48조(직위해제 및 해임) ①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9.09.16,2016.02.23)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의 법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신설 2016.02.23)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09.09.16,2016.02.23)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한 보수는 봉급의 8할(연봉제의 경우는 연봉월액의 45퍼센트)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의 보수는 봉급의 5할(연봉제의 경우는 연봉월액의 28퍼센트)을 지급한다.(개정 2009.09.16,2014.02.27)
- ④ 임용권자는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개정 2009.09.16,2016.02.23)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09.16,2016.02.23)
- ⑥ 제1항 제1호와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함께 있을 때에는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9.09.16,2016.02.23)
- ⑦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2009.09.16,2016.02.23)

제49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교 교원의 보수는 연봉제로 하며,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2. 고등학교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02.27]

제50조(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 학과(부), 교육 및 연구 관련 기구 또는 직제 등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09.21,2013.04.25)

-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 ③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2.09.21,2013.04.25)

제50조의 2(명예퇴직 수당) ①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50조의 3(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 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50조의 4(면직)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당해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때(개정 2019.09.01.)

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본조 신설 2016.02.23.]

###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

제51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하되, 대학교의 경우 강사 및 겸임교원 등을 포함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6.11.21., 2016.02.23., 2019.07.01.)

제52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대학교의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총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임용 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용,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개정 2012.08.21, 2016.02.23)
2. 교원의 교육, 연구 등에 관한 업적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개정 2006.11.21)

② 고등학교의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2.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3.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개정 2006.11.21)
4.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인사위원회가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임용 기간 중의 다음과 같은 업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1. 학생의 교수,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2.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활동
3. 교내외 봉사 실적
4.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제53조(인사위원회의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다음 각 호의 교원 및 직원으로 조직한다.(개정 2015.09.22)

1. 대학교는 18인 이내의 교원 및 직원(단, 위원 정수는 따로 규칙으로 정함.)(개정 2006.06.26, 2013.06.25, 2014.04.24, 2015.09.22, 2015.10.23)
2. 고등학교는 7인의 교원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는 보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02.27)

제54조(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대학교의 경우에는 교학부총장이 위원장이 된다.(개정 2013.06.25, 2015.09.22)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5조(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심의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6조(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한다.

제57조(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58조(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 제 2 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9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12.22)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6.08.25.,2019.09.01.)

1. 교원 또는 학교법인 이사 : 5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이 법인에 속하지 아니한 자로 이사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 1인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6.08. 25)

④ 교원징계위원회의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6.08.25)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7조의2에 따른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59조의2(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사립학교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개정 2019.10.18.)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한다.

③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④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본조 신설 2019.09.01.]

제60조(삭제)

제61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 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2조(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성(性)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9.09.01.)

제63조(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63조의 2(위원의 기피 등)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3조의 3(징계의결의 요구)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소속교원 중에 제59조의 2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9.09.01.)

[본조 신설 2016.02.23]

제63조의 4(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 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02.23)

제64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5조(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제59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정도 및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사립학교법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9.09.01.)

③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한 결과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주문(主文)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보내어 알려야 한다.(개정 2012.09.21., 2014.11.21., 2019.09.01.)

④ 임용권자가 제3항의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65조의 2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09.01.)

⑤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5조의 2(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징계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 제65조 제3항에 따른 징계의결서를 받은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09.01.)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징계의결의 내용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가 관할청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하며, 해당 교원징계위원회가 재심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6.02.23]

제66조(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66조의2(징계양정의 기준) ① 징계양정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에게 징계양정은 공적 등에 따라 감경하거나 비위 행위의 경합과 시기에 따라 가중할 수 있으며, 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의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참작하여 징계의결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징계의 감경과 가중기준 및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의 문책기준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09.21.][전문개정 2013.04.25.](개정 2016.02.23)

제66조의 3(징계사유의 시효)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2.09.21, 2016.02.23.,2019.09.01.)

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신설 2016.02.23)
2.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신설 2016.02.23)
3. 교육공무원법 제52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신설 2016.02.23)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2.09.21)

제67조(교원징계위원회 간사 등)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67조의2(비밀누설의 금지)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신설 2016.08.25)

제68조(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9조 내지 제82조(삭제)

### 제 3 절 사무직원

제83조(자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고용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일반직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4.02.27)

③ 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84조(임용) ① 일반직원의 신규채용·승진·승급·대우직원 선발·전직·전보·강임·휴직·직위해제·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4.02.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84조의2(인사교류) 임용권자는 법인이 유지·경영하는 각급 학교 사무직원을 업무상 필요한 경우 또는 학교폐지 등의 사유로 부득이한 경우 각급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법인 내에서 전보 발령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의사에 반한 전보 발령은 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9.02.13.]

제85조(복무) ①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교원에게 적용하는 정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고등학교의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정관의 규정 및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공무원복무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6.02.23]

제86조(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교 직원의 보수는 연봉제로 하며, 세부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2. 고등학교 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02.27]

제87조(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교원에게 적용하는 정관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12.09.21)

제87조의 2(명예퇴직) ① 20년 이상 근속한 사립학교 사무직원 중 퇴직예정일 현재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서 자진 퇴직하고자 할 경우 명예퇴직 할 수 있다.(2009.03.09)

② 명예퇴직 하는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2009.03.09)

③ 명예퇴직 시행에 필요한 절차, 자격요건, 수당산정 공식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2009. 03.09)

제88조(징계 및 재심청구) ① 일반직원의 징계는 교원에게 적용하는 정관의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개정 2012.09.21)

② 일반직원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제 7 장 직제

### 제 1 절 법인

제89조(법인 조직)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참여 또는 부참여로 보한다.

② 법인사무국에는 업무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04. 27)

③ 이 법인과 설치학교의 건학정신 구현 및 선교활동을 위하여 대학교회와 선교위원회를 두며, 선교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1.04.27,2014.11.21)

### 제 2 절 대학교

제90조(총장 등) ① 대학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③ 대학교에 교학부총장, 대외부총장, 특임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학부총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대외부총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별정직으로 보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특임부총장의 자격 및 임기는 따로 정한다. (개정 2011.04.27, 2014.07.24, 2015.08.20, 2015.09.22, 2015.12.18, 2017.02.23.)

④ 교학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유고시에 교학부총장, 대외부총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교학부총장, 대외부총장, 특임부총장의 분장업무는 따로 정한다.(개정 2010.11.05, 2014.07.24, 2015.08.20, 2015.09.22, 2015.12.18, 2017.02.23)

⑤ (삭제 2014.07.24)

제91조(학장, 대학원장) ① 대학교의 각 단과대학에 학장을, 각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둔다.(개정 2009. 09.16)

② 학장과 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③ 학장과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제92조(하부조직) ① 대학교에 교목실을 두며, 교목은 목사자격자로서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별정직으로 보할 수 있다.

② 대학교에 대학혁신본부, 총무처, 안전방재관, 산학협력단, 만우교육문화연구원, 교학처, 기획처, 입학관리처, 진로취업처/대학일자리센터, 국제교류처, LINC+사업단, 특수외국어사업단, IPP사업단, 청해진사업단을 둔다.(개정 2015.09.22.,2015.12.18.,2016.03.30.,2016.07.22.,2017.06.22., 2017.09.22.,2018.08.24., 2019.02.13.,2019.07.01.)

③ 본부장, 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책임행정관 이상의 직원 또는 별정직으로, 안전방재관은 책임행정관 이상의 직원으로, 산학협력단장, 각 사업단 단장, 원장은 교원(비전임교원 포함), 책임행정관 이상의 직원 또는 별정직으로 보한다. 단, 본부장, 처장을 교원으로 보하는 경우에는 외부기관의 경력기간 등을 감안하여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15.09.22, 2015.12.18., 2018.08.24., 2019.02.13., 2019.07.01., 2019.09.01.)

④ 제1항 내지 제2항에 명시된 조직의 하위부서 보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의 승인을 거쳐 총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09.22.,2016.02.23.,2019.02.13.)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08.20]

제93조(단과대학 등의 하부조직)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교원(비전임교원 포함), 선임행정원 이상의 직원 또는 별정직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정한다.(개정 2015.09.22)

제94조(부속시설) ① 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② 부속시설에 각각 장과 부기관장을 둘 수 있으며, 부속시설의 장 및 부기관장은 교원(비전임교원 포함), 선임행정원 이상의 직원 또는 별정직으로 보한다.(개정 2012.02.02,2014.07.24,2015.09. 22,2016.07.22,2016.08.25)

③ 부속시설의 장은 총장 또는 학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부속시설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교원(비전임교원 포함), 선임행정원 이상의 직원 또는 별정직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정한다.(개정 2015.09.22)

제95조(삭제) (개정 2007.09.10)

### 제 3 절 고등학교

제96조(교장 등) ① 고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 또는 2인을 둔다.

②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교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신설 2013.08.27)

제97조(하부조직) 고등학교에 교목실과 행정실을 두고 교목은 목사자격자로서 교사 또는 별정직으로 보하고, 실장은 주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 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02.02.,2019.07.01.)

제98조(행동강령) 고등학교 교직원의 행동강령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한다.(신설 2015.06.26)

### 제 4 절 정원

제100조(정원 및 정년) ① 법인 및 각급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 및 정년은 각각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다. 다만, 고등학교 사무직원 근속승진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② 법인과 각급학교에 현저한 공헌을 한 자 또는 각급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긴요한 능력과 자질을 가진 자로서, 정년을 연장하여 근무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근속자 혹은 특별채용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년을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0.11.05)

## 제 8 장 보 칙

제101조(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국내일간신문에 공고한다.  
(개정 2013.06.25)

제102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103조(설립당초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임원	성명	임기	주소
이 사 장	정 태 성	4년	부산시 부산진구 적기동 4가 7-2
이 사	임 봉 은	2년	부산시 부산진구 적기동 4가 7-2
	임 지 수	2년	부산시 부산진구 적기동 4가 7-2
	정 해 덕	2년	부산시 부산진구 적기동 4가 7-2
	정 해 수	2년	부산시 부산진구 적기동 4가 7-2

부 칙

이 정관은 1959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64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67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7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75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76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77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77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78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79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79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1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3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4년 6월 8일부터 시행하되 성지공업전문대학에 관한 종전 규정의 변경사항은 학교법인 서린학원이 설립 인가를 받고 법원에 설립등기가 완료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6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 중인 이사는 그 임기 만료 시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정관은 1987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0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0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1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학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교원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정관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 중인 이사의 임기는 종전정관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하며, 정관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만료 시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정관은 1998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로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개시 및 만료 시기)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임기는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임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최초 소집일부터 개시하며, 차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임기 개시일 전일에 만료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1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1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계약제임용에 관한 경과 조치) 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신규임용된 대학교원부터 적용되며, 2001년 12월 31일 이전 임용되어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대학교원의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 “재직 중인 대학교원에 대한 임용지침”을 준용하되, 근무기간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교 수 : 정년
2. 부 교 수 : 6년
3. 조 교 수 : 3년
4. 전임강사 : 2년
5. 조 교 : 1년

부 칙

이 정관은 2002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3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4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임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1일 이후 임면되는 학교의 장과 조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5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5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6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 제1항 및 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2조 제1항 및 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행되는 신규채용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원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2조 및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학교운영 위원회 및 대학평의위원회의 이사추천의 수가 미달하는 경우에는 임원을 새로이 구성하거나 임원의 임기가 만료 등으로 인하여 결위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동위원회의 추천에 의한 임원의 구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은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임원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임원 및 교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 중인 임원 또는 교원은 제24조의 4 제2호·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취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정관은 2007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보직 임면권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보임 중인 도서관장은 제43조 제3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보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1. 08. 05)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2. 02. 02)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2. 02. 27)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2. 08. 21)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2. 09. 21)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2. 12. 18)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3. 02. 15)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3. 04. 25)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3. 06. 25)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3. 08. 27)

- ①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장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중인 교장의 임기는 종전의 잔여임기까지로 한다.
- ③ (교감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교감은 2013년 9월 1일자부터 이 정관을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13. 11. 27)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 2. 27)

- ①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대학교 일반직원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전에 신규 임용된 2급 및 3급 일반직원의 정년은 종전의 정년으로 한다.

부 칙(개정 2014. 03. 18)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 04. 24)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 07. 24)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 11. 21)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② (하부규정의 폐지) 이 정관의 시행과 함께 대학교의 “대학교회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개정 2014. 12. 30)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 06. 26)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 08. 20)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 09. 22)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 10. 23)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 12. 18)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6. 02. 23)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3, 제48조 제1항 제4호, 제48조 제6항의 시행일은 사립학교법 부칙 제1조(개정 2016.02.03)를 따른다.
- ② (적용례) 제43조 제7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적용, 제43조의3의 개정 규정에 의한 의원 면직 제한에 관한 적용, 제48조 제1항 제4호의 개정 규정에 의한 직위해제 대상에 관한 적용 및 제44조 제7호의2 개정 규정에 의한 휴직사유에 관한 적용은 사립학교법 부칙 제2조 내지 제5조(개정 2016.02.03)를 따른다.

부 칙(개정 2016. 03. 30)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6. 07. 22)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6. 08. 25)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7.02.23.)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7.06.22.)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7.09.22.)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8.08.24.)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9.02.13.)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9.06.14.)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9.08.29.)

제1조(시행일) 변경 정관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의결의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전에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62조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62조 본문에 따른다.

제3조(징계의결에 관한 경과조치) 제65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임용권자가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19.10.18.)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법인일반직원 정원

총계	42명
일반직계	3명
2급(참여)	
3급(부참여)	1명
4급(참사)	
5급(부참사)	
6급(주사)	1명
7급(부주사)	
8급(서기)	1명
9급(부서기)	
수익사업계	39명
6급(주사)	1명
8급(서기)	3명
의사	3명
의료기사	3명
간호원	2명
보조간호원	10명
약사	1명
영양사	1명
운전기사	1명
잡부	14명

(별표 2) (개정 2014.2.27.)

학교 일반직원 정원표

부산외국어대학교		성지고등학교		비고
직급	정원 수	직급	정원 수	
<b>총계</b>	<b>108</b>	<b>총계</b>	<b>30</b>	
일반직 계	107	일반(기술)직 계	29	
G1(책임행정관)	26	2급(참 여)		
G2(선임행정원)	54	3급(부참여)		
G3(담당행정원)	27	4급(참 사)		
		5급(부참사)	1	
		6급(주 사)	2	
		7급(부주사)	4	
		8급(서 기)	7	
		9급(부서기)	15	
<b>별정직 계</b>	<b>1</b>	<b>별정직 계</b>		
		<b>기술직 계</b>	<b>1</b>	
		4급 사서관		
		5급	사 서 관 전산처리관	
		6급	사 서 전기기사 전산처리사	
		7급	사 서 보 전기기사보 전산처리사보	
		8급	사 서 서 기 전기기원 전산처리원	
		9급	사서서기보 전기기원보 전산처리원보	1
<b>고용직 계</b>		<b>고용직 계</b>		

(별표 3) (개정 2014.2.27,2016.02.23.)

학교 일반직원의 정년

구분	정년		비고
부산외국어대학교	일반직	G1(책임행정관)	만 60세
		G2(선임행정원)	만 60세
		G3(담당행정원)	만 60세
성지고등학교	국가공무원법 준용		

(별표 4)

## 사 학 윤 리 강 령

지난 한 세기 동안 사학은 나라와 겨레의 발전을 선도해 왔다.

이처럼 빛나는 전통을 이어 받은 우리 사학은 지금, 새 세기의 문명사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창의적이고 도덕적으로 성숙된 인재를 양성할 역사적 책무를 부여받고 있다.

이에 우리 사학경영자 일동은 교육입국의 사명감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사학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더욱 드높이고자, 뜻을 모아 사학윤리강령을 채택한다.

우리는 양심과 긍지를 가지고 이 강령을 준수하며, 이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권면과 제재로 이를 자율적으로 시정해 나아갈 것을 다짐한다.

### ○ 건학정신

우리는 사학의 뿌리가 숭고한 건학정신에 있음을 명심하며, 오로지 그 높은 뜻을 계승하고 실현하는 일에 헌신한다.

### ○ 공공성

우리는 사학경영에 있어서 학원내외의 개인이나 집단의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공공성의 원칙을 존중함으로써 교육복지이념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 ○ 자주성

우리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사학의 본질을 침해하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단호하게 배격하며, 자율적으로 교육방침을 실천하여 사학의 특수성을 앙양한다.

### ○ 경영합리화

우리는 사학경영을 합리화·효율화하고, 모든 교육자원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보호함으로써 교육효과를 극대화하는 일에 우선적인 노력을 경주한다.

### ○ 화합·협력

우리는 사학구성원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화합·협력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며, 모든 구성원의 정당한 권익이 존중되도록 노력한다.

## II. 정관시행세칙

제정 : 2011. 4. 2.

개정 : 2012. 9. 21, 2014. 7. 24, 2014. 11. 21, 2016. 02. 23.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학교법인 성지학원 정관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모든 재산의 관리 책임자는 이사장이 된다. 다만, 교육용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관리 보존한다.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교육용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관리 보존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사업시행 이전에 그 사업계획에 대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건물 신·증축에 관한 사항
2. 기본 시설의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3. 교육용 토지의 지형 및 형질변경에 관한 사항
4. 조정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5. 구축물 신설 및 멸실에 관한 사항
6. 주차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7. 법인 명의로 등록되는 각종 교육용 보통재산의 설비에 관한 사항
8. 기타 재산의 관리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재산목록 등의 비치) 법인과 학교에 비치하여야 하는 장부와 서류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52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수입·지출 및 재산증감 보고) 학교의 장은 매월 말 현재의 수입·지출보고서와 재산증감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학교의 경영에 관한 주요사항) 정관 제31조 제2항 제6호에서 규정한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 07.24)

1. 학교의 장단기 발전계획과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생정원의 증감, 학과, 대학, 대학원의 개폐에 관한 사항
3. 자산, 회계, 인사, 보수, 직제 등,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4. 학교의 건축 등, 시설, 설비에 관한 사항
5. 교육용 재산의 장기대여 등, 주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기타 이사회의 심의·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고문 및 자문위원회) ① 법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에 고문 또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이사회 또는 이사장이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③ 위원회의 조직 등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고문 및 상근임원의 위촉 및 보수) 상근하는 법인 고문 또는 임원은 이사장이 위촉하며, 보수는 자금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고문 및 임원의 조사연구비 등) 이사회의 안전에 대한 조사연구비 및 여비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규정적용기준) 법인 직원의 인사·급여·복무 등에 대하여는 학교규정을 준용하여 이사장이 정한다.

제10조(교원 임용 승인신청) 정관 제43조 제2항, 제3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임용 승인신청은 발령예정일 15일 전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6.02. 23)

제11조(직원임용 제정) 정관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원의 임용 제정은 발령 예정일 15일 전에 하여야 한다.

제12조(교·직원 신규임용) 교원 또는 일반직원을 신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인력활용계획에 의하여 사전에 이사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13조(각종 규정류 등) ① 이 시행세칙에서 “규정류”라 함은 법령 및 정관에 준거하여 학교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속적인 효력을 가지는 제반 체계적인 규범형식인 학칙, 규정, 시행세칙, 내규를 말한다.

② 동 시행세칙 제5조에 관련된 규정류는 다음 각호1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사장의 승인으로 제정·개정·폐지 할 수 있다.

1. 관련 상위 법규 및 정관의 변경
2. 용어 변경 등 본래의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조문 변경
3. 기타 위 각호에 상응하며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동 시행세칙 제5조에 관련된 규정류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될 경우 이사장은 관련규정의 제정·개정·폐지를 학교에 권고하거나 이사회 의결로 제정·개정·폐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1.21]

제14조(위임사무의 처리) ① 학교의 장은 법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시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적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정책수립 등 중요사안은 사전에 법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위임한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부당 또는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으며, 수시로 확인 또는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15조(권한의 위임) 법령과 정관 및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정관시행 및 법인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2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 07. 27)

(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 11. 21)

(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6. 02. 23)

(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Ⅲ. 연혁

1959. 12. 24. 재단법인 성창학원 설립  
초대 이사장 고 정태성 박사 취임
1981. 11. 21. 학교법인 성지학원으로 변경  
12. 26. 부산외국어대학 설립(영어과, 불어과, 독일어과, 일본어과, 중국어과, 태국어과,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회계학과 : 10개 학과)
1982. 3. 1. 초대 학장 박화술 박사 취임  
12. 개교 및 제1회 입학식  
24. 외국어연수원 개원  
31. 국제회의실 및 동시통역실 개관  
10. 5. 5개 학과 신설(스페인어과, 아랍어과, 국어국문학과, 법학과, 전산학과)
1983. 8. 7. 종합시청각실·사운드라이브러리 개관  
9. 8. 2개 학과 신설(인도어과, 외교학과), 야간강좌 2개 학과 개설(영어과, 독일어과)
1984. 2. 21. 새마을연구소 설치  
9. 11. 박물관 개관  
10. 5. 야간강좌 2개 학과 개설(불어과, 일본어과) 및 정원 증원(영어과·영어과(야), 일본어과)  
11. 22. 학군사관후보생(R.O.T.C.)과정 설치
1985. 2. 21. 무역경영연구소 설치  
10. 2. 부산외국어대학교 우체국 개국  
12. 9. 초대 이사장 정태성 박사 퇴임  
30. 제2대 이사장 정해수 이사 취임
1988. 1. 5. 전자계산소 설치  
2. 1. 취업보도실 설치  
11. 제2대 학장 박화술 박사 퇴임  
16. 제3대 학장 김동선 박사 취임  
27. 제3회 학위 수여식(566명)  
10. 29. 4개 학과 신설(노어과, 경제학과, 수학과, 통계학과) 및 야간강좌 전산학과 개설  
11. 30. 대학원 신설(석사학위과정 : 영어영문학과, 법학과)  
12. 제2대 이사장 정해수 이사 퇴임  
국제문제연구소 설치
1989. 2. 1. 제3대 이사장 서정실 이사 취임  
25. 제4회 학위 수여식(752명)  
10. 28. 2개 학과 신설(이태리어과, 사회체육학과)  
11. 6.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국어국문학과 신설  
12. 30. 교육대학원 설치(석사학위과정 : 영어교육전공, 국어교육전공, 일반사회교육전공)
1990. 2. 23. 제5회 학위 수여식(920명)  
10. 16. 베트남어과 신설  
11. 8. 대학원 4개 학과 신설(석사학위과정 : 독어독문학과, 전산학과, 외교학과, 경영학과)
1991. 2. 7. 학부제 개편(서양어학부, 동양어학부, 인문사회학부, 경상학부, 이공학부, 2부 학부)  
중·소문제연구소 설치  
22. 제6회 학위 수여식(902명)  
6. 3. 위성방송 수신 시스템 개관  
7. 8. 자매결연(멕시코 과달라하라대학교)  
19. 자매결연(중국 이엔타이(烟台)대학)  
9. 17. 자매결연(모스크바 자오치느이사범대학)  
20. 자매결연(모스크바외국어대학교, 모스크바국립사범대학)  
10. 22. 미얀마어과 신설  
28. 종합대학 승격 인가(5개 대학 27개 학과)  
11. 18. 대학원 2개 학과 신설(석사학위과정 : 불어불문학과, 아주지역학과)  
교육대학원 2개 전공 신설(석사학위과정 : 독어교육전공, 상업교육전공)

1992. 2. 23. 제7회 학위 수여식(1,152명)  
28. 초대 총장 김동선 박사 취임  
7. 28. 대학원 2개 학과 신설(석사학위과정 : 언어학과, 무역학과)  
31. 경영정보학과 신설 및 야간강좌 2개 학과 개설(노어과, 중국어과)  
9. 1. 교육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수학교육 전공 신설
1993. 2. 26. 제8회 학위 수여식(1,195명)  
28. 초대 총장 김동선 박사 퇴임  
8. 20. 제4대 이사장 정해린 이사 취임  
9. 4.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일어일문학과 신설  
6. 교육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일어교육전공 신설
1994. 1. 11. 제2대 총장 박봉식 박사 취임  
14. 자매결연(일본 다이토우분카(大同文化)대학)  
2. 25. 제9회 학위 수여식(1,186명)  
7. 4. 자매결연(중국 상하이(上海)외국어대학교)  
9. 5. 4개 학과 신설(중앙아시아학과, 사학과, 철학과, 전자공학과) 및 야간강좌 경영학과 개설  
10. 21. 국제경영대학원 설치(석사학위과정 : 국제경영전공, 국제무역전공, 경영정보전공)  
29. 자매결연(미국 토우슨주립대학교)
1995. 2. 24. 제10회 학위 수여식(학사 1,211명, 석사 60명)  
10. 20. 제2대 총장 박봉식 박사 퇴임
1996. 2. 23. 제11회 학위 수여식(학사 1,180명, 석사 54명)  
3. 5. 제15회 입학식  
4. 22. 제3대 총장 조규향 박사 취임  
5. 27. 자매결연(인도네시아 봉하타대학교)  
10. 24. 야간강좌 경영정보학과 개설  
30. 교육대학원 2개 전공 신설(석사학위과정 : 체육교육전공, 전산교육전공)  
11. 2. 국제경영대학원 → 국제경영지역학대학원으로 개편 및 2개 전공 신설  
(석사학위과정 : 아프리카지역전공, 아주지역전공)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설치(영어영문학과)  
4. 자매결연(뉴질랜드 와이카토대학)
1997. 1. 9. 자매결연(베트남 호지명머반꽁대학교)  
13. 자매결연(베트남 호지명인문사회과학대학)  
2. 6. 자매결연(인도 델리대학)  
14. 자매결연(태국 람캄맹대학교)  
21. 제12회 학위 수여식(학사 1,370명, 석사 26명)  
6. 30. 자매결연(인도네시아 국립대학)  
7. 9. 자매결연(폴란드 오폴레대학)  
10. 25.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일어일문학과 신설  
11. 8. 제17회 전국 대학생 외국어 경시대회 주최  
10. 국제전문실무인력양성을 위한 국책대학으로 선정(교육부 지정)  
12. 27. 공무원 국외훈련을 위한 어학검정기관으로 선정(총무처 지정)
1998. 2. 12. 가상대학 시범운영 기관 선정(교육부 지정)  
20. 제13회 학위 수여식(학사 1,146명, 석사 40명)  
21. 총장 직무대리 문영득 교무처장 임명  
24. 제3대 총장 조규향 박사 퇴임  
3. 3. 제17회 입학식  
8. 27. 자매결연(미국 애크론대학)  
9. 1. 제4대 총장 서의택 박사 취임  
22. 국제통상지역원 교육부 실사  
10. 26.~27. 대학종합평가 실시  
28. 국제통상지역원 '98년 교육부 평가, 국제전문실무인력양성분야 전국 최우수대학 선정  
11. 7. 제18회 전국 대학생 외국어 경시대회 주최  
26. 자매결연(미국 쉐러국제대학)
1999. 1. 1. 연구소 신설(정보과학 연구소)  
20. 자매결연(중국 북경어언문화대학)  
2. 19. 제14회 학위 수여식(학사 1,338명, 석사 39명)  
22. 대학종합평가 3개 영역 우수대학 선정(연구, 시설·설비, 사회봉사)

- 3. 5. 자매결연(중국 천진외국어대학교)
- 13. 자매결연(일본 고시엔대학교)
- 23. 자매결연(이태리 페루지아외국어 대학교)
- 9. 3. 국제통상지역원 교육부 실사
- 11. 2.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10명, 박사과정 5명 증원 인가
- 6. 제19회 전국대학생 외국어 경시대회 주최
  
- 2000. 1. 11. 정보통신부지정 정보통신분야 소프트웨어 관련학과 지원대학 선정
- 2. 2. 일반대학원 종합평가 3개 영역 우수(교육과정, 수업 및 논문지도, 재정·경영)
- 18. 제15회 학위 수여식(학사 1,393명, 석사 80명)
- 20. 대학교회 창립
- 3. 10. 자매결연(인도 네루대학)
- 5. 14. 자매결연(인도네시아 가자마다대학교)
- 8. 18. 자매결연(태국 까셋삿대학교)
- 9. 6. 학문분야(법학부)평가 우수대학 선정
  
- 2001. 1. 12. 자매결연(일본 메이카이대학교)
- 2. 13. 정보통신부지정 정보통신관련학과(정보시스템전공) 장비지원사업 선정
- 16. 제16회 학위 수여식(학사 1,471명, 석사 48명, 박사 2명)
- 23. 2000년도 학문분야(학부 및 대학원 컴퓨터공학)평가 우수대학 선정
- 3. 2. 제20회 입학식
- 4. 10. 자매결연(미국 바이올라대학교) BIOLA UNIVERSITY
- 6. 7. 평생교육원 설립인가
- 15. 전국중학생 영어·고등학생외국어경시대회(전국시도교육청연합회 주관) 개최
- 7. 25. 2001학년도 전국고등학생외국어경시대회(부산외국어대학교 주관) 개최
- 8. 24. 학생서비스센터(SSC) 개소
- 9. 25. 제3회 전국 주한 외국인 한국어 웅변대회 및 장기자랑
  
- 2002. 2. 15. 제17회 학위 수여식(학사 1,556명, 석사 44명, 박사 3명)
- 28. 제21회 입학식
- 3. 12. 개교 20주년
- 6. 15. 제19회 전국시도연합회 주최 부산시 중학생 영어 및 고등학생 외국어경시대회 개최
- 7. 25. 제4회 전국 고등학생 외국어 경시대회 개최 - 우리 대학교 주최
- 8. 17. 2002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교육개혁 최우수대학 선정(교육과정 개발 및 특성화 분야)
- 9. 1. 제5대 서의택 총장 취임
- 10. 30. 통역번역대학원 인가(한영전공, 한일전공, 한중전공, 한영일전공, 한중일전공)
- 11. 18. 2002년도 교육인적자원부지정 지방대학 육성사업 재정지원 대상대학 선정
  
- 2003. 2. 21. 제18회 학위 수여식(학사 1,464명, 석사 40명, 박사 3명)
- 28. 제22회 입학식
- 7. 21. 2003년도 교육인적자원부지정 지방대학 육성사업 재정지원 대상대학 선정
  
- 2004. 2. 20. 제19회 학위 수여식
- 24. 정보통신부 지정 IT학과 교과과정 개편지원사업 선정
- 3. 2. 제23회 입학식
- 4. 9. 자매결연(우즈베크 타쉬켄트 사범대학)
- 6. 7. 제1회 부산광역시 일본어 말하기대회 개최(부산외국어대학교와 나가사키외국어대학 공동 개최)
- 11. 자매결연(중국 광둥외어의무대학)
- 14. 자매결연(미얀마 양공외국어대학)
- 7. 13. 자매결연(태국 씨나카린위룻대학교)
- 9. 17. 자매결연(우즈베크 외국어대학교)
- 10. 21.~23. 제2주기 대학종합평가 인정을 위한 현지방문 평가
- 12. 28. 2003학년도 학문분야(경제학과)평가 전부문 '적합' 인정
  
- 2005. 1. 19. 산학협정 체결(group4falck와의 산학협정 체결)
- 28. 자매결연(우즈베크 사마리칸트외국어대학교)
- 2. 15. 2004학년도 교육대학원(교육 프로그램) 평가 우수 인정
- 17. 제2주기 대학종합평가 우수대학 인정  
(교육 및 사회봉사영역 : 최우수 / 발전전략 및 비전영역, 교육여건 및 지원체제영역 : 우수)
- 18. 제20회 학위 수여식
- 3. 2. 제24회 입학식
- 16. 산학협정 체결(부산교육청과 고등학교 제2외국어 위탁교육 협약식)
- 18. 교류협정 체결(창신대학과의 교류협정 체결)

2005. 3. 21. 산학협력 체결(현대자동차와 산학협력 협정 체결식)  
 4. 4. 자매결연(터키 앙카라대학)  
 27. 산학협력 체결(부산광역시생활체육협의회와의 산학협력 협정)  
 5. 17. 자매결연(일본 바이카여자대학)  
 산학협력 체결(드림골프서비스와 산학협력 체결)  
 23. 자매결연(중국 북경외국어대학)  
 25. 자매결연(중국 중남임학원)  
 6. 17. 산학협력 체결(부산일보사와의 산학 협력협정 체결)  
 21. 자매결연(캐나다 셀커크대학)  
 28. 산학협력 체결(에스텍시스템과 산학협력 체결)  
 7. 8. 자매결연(미국 샌디에이고 주립대학교)  
 8. 16. 산학협력 체결((주)국제어학당과 산학협력 체결)  
 9. 28. 산학협력 체결(부산외대 시네마테크 부산과 산학협력 체결)  
 10. 12. 자매결연(청도여행학교)  
 31. 산학협력 체결(마오필름(과) 산학협력 체결)  
 11. 2. 산학협력 체결(부산지방노동청과 관학교류·취업협력 체결)  
 3. 자매결연(화동예술전수학교)  
 12. 5. 자매결연(공정학원)  
 9. 자매결연(대련경제무역외어학원)  
 10. 자매결연(대련외국어대학)  
 14. 자매결연(래주제1중학)  
 자매결연(연주정보공정학교)  
 17. 자매결연(상해공상외국어학원)  
 자매결연(상해공상외국어학원 부속고등학교)  
 20. 자매결연(상해외국어학교)
2006. 2. 17. 제21회 학위 수여식  
 3. 2. 제25회 입학식  
 31. 산학협력 체결((주)삼성전기 부산사업장과 산학협력 체결)  
 산학협력 체결((주)한진중공업과 산학협력 체결)  
 5. 2. 산학협력 체결((주)에이원 제이씨와 산학협력 체결)  
 6. 1. 산학협력 체결(현대중공업(주) 특수선 사업부와 산학협력 체결)  
 8. 24. 총장 직무대행 류중렬 교무처장 임명  
 제5대 총장 서의택 박사 퇴임  
 9. 25. 산학협력 체결(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남부지사와 산학협력 체결)  
 11. 10. 산학협력 체결(예쁜미소바른이치과와 산학협력 체결)  
 29. 산학협력 체결((주)코모도호텔과 산학협력 체결)  
 산학협력 체결((주)파라다이스호텔과 산학협력 체결)  
 12. 8. 산학협력 체결(호메르스호텔과 산학협력 체결)
2007. 2. 9. 산학협력 체결((주)제이아이와 산학협력 체결)  
 3. 1. 제6대 총장 유선규(柳宣圭) 박사 취임  
 2. 제27회 입학식  
 5. 노동부 지원 “2007년도 대학취업지원 기능 확충사업” 선정  
 8. 학술교류 협정(일본 고치대학)  
 5. 21. 학술교류 협정(TESOL 대학원과 미국 위스콘신대학교(River Falls))  
 31. 학술교류 협정(제주산업정보대학)  
 6. 31. 진료협약 체결(성모병원과의 진료협약 체결)  
 9. 13. 진료협약 체결(고신대학교 복음병원과의 진료협약 체결)  
 11. 13. 관학 협정 체결(남구장애인복지관)  
 관,산,학 협정 체결(일본 쓰시마시, (주)대아고속해운)
2008. 1. 14. 자매결연 협정 체결(일본 카라츠세이쇼 고등학교)  
 22. 복수학위 협정 체결(미국 트로이대학)  
 23. 복수학위 협정 체결(미국 오클라호마 주립대학)  
 26. 복수학위 협정 체결(미국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 주립대학)  
 2. 4. 남산동 캠퍼스부지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  
 13.~ 15. 2007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  
 3. 3. 제28회 입학식  
 7. 2008년도 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선정(부산지방노동청)

11. 제1회 총장배 고등부 학생골프대회 개최
18. 복수학위 협정 체결(호주 퀸즈랜드대학교(The University of Queensland))
4. 1. 초·중등 영어교육 교사연수센터 운영 양해각서 체결(부산광역시 교육청)
3.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협약 체결(성지공고)
5. 9. 산학협정 체결(일본 (주)어스인터 시스템즈(Earth Inter Systems), 케이비트(K-BIT), 스카이콤(SkyCom))
29. 대학원생 교류협정 체결(중국 천진외국어대학 뻬하이외사학과)
6. 5. 복수학위 협정 체결(일본 나가사키 외국어대학)
9. 학술교류 협정 체결(미국 볼 주립대학(Ball State University))
20. 산학 협약 체결(효성시티병원과의 실습기자재 활용 협약 체결)
23. 학술교류 협정 체결(요르단 야르묵대학교(Yarmouk University)와의 교환학생 협정 체결)
24. 산학 협약 체결 ((주)세정)
- 제6회 복수학위제 외국인 유학생 학위 수여식
8. 12. 인도네시아 안달라스대학교와 복수학위 협정 체결
18. 제1회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름영어캠프 개소식
22. 2007학년도 후기 학위 수여식
26. 호주 테즈메니아대학교와 복수학위 협정 체결
27. 호주 썬사인코스트대학교 복수학위 협정 체결
9. 11. 말레이시아 술탄 이드리스 교육대학교와 복수학위 협정 체결
25. 태국 씨나카린위룻대학교 복수학위 협정 체결
11. 25. 한국해양수산연수원과의 상호협력 협정 체결
2009. 2. 17. 2009년도 해외 취업 연수기관 선정
22. 제24회 2008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
3. 2. 2009학년도 입학식
3. 제2외성생활관 개관식
5. 부산 성모병원 부산외대 사회 공헌 협약식
9. 초·중등 영어 교사 심화연수 개강식
10. 중남미지역원 개원식
6. 4. 제7회 한일환경정화운동
7. 9. 제7회 복수학위제 외국인 유학생 학위 수여식
15. 제3회 필리핀 해외봉사활동
27. 2009학년도 중등영어교사 테솔직무연수 개강식
8. 17. 부산외국어대학교 하노이 국립인문사회과학대 학술교류 협의
21. 2008학년도 후기 학위 수여식
9. 4. 초·중등 영어교사 심화연수 개강식
21. 제4회 자랑스러운 부산외대인상 시상식
10. 12. 제2회 외국인 한글 백일장 개최
26. 유선규 총장 상해외대, 광동외어의무대학 방문/협정 체결
11. 11. 부산외국어대학교 - 한국생산성본부 산학협정 체결식
12. 14. 하노이 인문사회과학 대학교 2+2 협정 체결
17. 기장군 도시관리공단과 산학협력 협약 체결식
19. 제11기 외성 해외문화체험단 발대식
2010. 1. 5. 경인년 신년회
3. 2. 2010학년도 입학식
19. 일본 후쿠오카여자대학교 교수 및 학생, 학술교류 협정 체결
4. 9. 동남아지역원 개원식
6. 16.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과의 해외마케팅 전담인력지원사업 협약 체결식
8. 13. 브라질 싸옹빠울루대학교와 학술교류 협정 체결
20. 2009학년도 제25회 후기 학위 수여식
10. 9. 제3회 외국인 한글 백일장 대회
12. 14. 일본 무사시노 대학 사사키미즈에 교수 명예문학박사 학위 수여식
2011. 1. 10. 컴공과 우수회 학생, 부산 모바일 앱 공모전 우수상 수상
2. 14. 유선규 총장 퇴임식
- 지중해지역원/국립 요르단 대학교 전략 문제 연구소 공동세미나
17. 제26회 2010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
- 2010학년도 제26회 전기 학위 수여식
- 중남미지역원 이베로아메리카대학 협정 및 국제공동세미나
21. 제7대 정해린 총장 취임식
25. 2010학년도 겨울학기 외국인어학연수생 수료식

- 2011.
- 2. 28. 2011학년도 입학식
  - 3. 4. 중남미지역원 제14차 월례세미나
  - 17. 중남미지역원 제32회 초청강연회
  - 18. 부산외국어대학교 - 기장군 관학 협정 체결
  - 22. 성지학원 백성애 이사장 취임
  - 28. 미국 랜더대학교(Lander University)와의 학술협정 체결
  - 31.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상공회의소와 산학협력 협약 체결
  - 제5회 자랑스러운 부산외대인상 시상식
  - 4. 12. 클린캠퍼스운동 실시
  - 23. 한국어문화교육원 제8회 외국인 학생 한국어 말하기 대회
  - 5. 13. 한국어문화교육원 2011년 봄학기 외국인어학연수생 수료식
  - 18. 정기영 대외협력처장, 부산시청 특별강연
  - 중남미지역원 2011협동연구 학술대회
  - 19. 차세대중남미지역전문가 양성프로그램 제6차 도시연구시리즈
  - 21. 제7회 부산외대 총장기 고교 동아리 축구대회
  - 6. 10. 제4회 지중해지역원 고교생문화탐사 대상 시상식
  - 25. 제14기 외성 해외문화체험단 발대식
  - 28. 부산외대, 부산지방경찰청 경·학 교류 협정식
  - 8. 3. 제2회 PUFs 국토 대장정 발대식
  - 16. 기장군 어린이 영어캠프 개최
  - 10. 6. 2011년도 제4회 외국인 한글 백일장대회
  - 8. 제9회 한일 환경정화 봉사활동
  - 11. 15. 부산외대, 하노이 지역 최초 세종학당 개소
  - 22. 제17회 부산외국어대학교 영어말하기 대회
  - 12. 12. 제4/5대 학군단장 이, 취임식
  - 16. 일본 미야자키대학 학술협정 체결
  - 23. 제15기 외성 해외문화체험단 발대식
- 2012.
- 1. 6. 부산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주)아시아 정보시스템 산학협력 협약
  - 31. 한국어문화교육원 2011년 동계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수료식
  - 2. 15.~17. 2012학년도 입학식 및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 17. 한국어문화교육원 2011년 정규과정 겨울학기 수료식
  - 20. 2012년 학군사관 50기 임관, 51기 승급, 52기 입단식
  - 23.~24. 2011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
  - 28. 북경외대 복수학위제 1기 학위 수여
  - 3. 3. 해외영어학기제(SAP) 1기 선발자 출국
  - 8. 대학청년고용센터 개소식
  - 4. 5. 2012년 재경동문회 창립총회
  - 12. (주)한국 타이페이대표부와의 협정 체결
  - 13. 부산국제광고제조조직위원회·부산외국어대학교와 MOU 체결
  - 16. 한국어문화교육원과 순다이외어 & 비즈니스전문학교 협약 체결
  - 28. BUFS 봉사단 발대식 및 금정산환경정화운동
  - 5. 2. 제9회 한국어말하기대회
  - 18. 부산외대 HK(인문한국)사업 해외지역연구소 공동국제학술대회
  - 23. 이중언어 교재 개발 기관 선정
  - 26. 제8회 부산외대 총장기 고교 동아리 축구대회 개막식
  - 6. 15. 제16기 외성 해외문화체험단 발대식
  - 17. 제8회 부산외대 총장기 고교 동아리 축구대회 결과
  - 18. 2012학년도 여름방학 신입생 학습력 강화 프로그램
  - 27. 제10회 복수학위제 외국인 유학생 수료식
  - (재)부산극동방송 산학협력 조인식
  - 7. 2. 제15기 한국어교원양성과정 개강식
  - 23. 교육연수원 초중등 심화연수 개강식
  - 부산전자공고 글로벌 영어캠프
  - 27. 제8회 금정구 어린이 영어캠프
  - 8. 6. 2012년 여름 기장군 청소년 영어캠프 개최
  - 10. 2012학년도 제13회 한국어문화교육원 한국어 교사 워크숍
  - 14. 영도여자고등학교 자매결연 협정 체결
  - 16. 순다이외대 한국어 단기 연수 개강식
  - 17. 2012학년도 후기 학위 수여식

- 27. 초·중영어교사 심화연수 1기 수료식
- 9. 12. 고흥군청 협정 체결식
- 17. 부산외국어대학교 - (주)AST컨소시엄 산학협정식
- 19. 일한언어문화교류원 단기과정 수료식
- 부산외국어대학교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관학협력 협약 체결
- 21. 2012년 특성화교육원 제18차 GLE 학술세미나
- 22. 외국인유학생 환영회 및 전통문화체험
- 10. 5. 제10회 한일환경정화운동
- 11. 하병주 교수 학술대회 개최
- 12. 송향근 교수,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임명
- 2012 외국인 한국어겨루기 대회
- 16. 부산구치소와의 협정 체결
- 22.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
- 24. 부산외대-경기도교육청 제2외국어교육관련 MOU 체결
- 26. 태국어과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 31.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 학술도서예 선정
- 11. 2. 외교학과, 대학생 모의시의회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
- 6. 순다외대 한국어 단기 과정 개강식
- 특성화교육원 조재형 교수, 연구성과 Economy Journal 11월호에 소개
- 8. 2012년도 제1회 교수장학금 수여식
- 11. 정해린 총장, 중국지역 8개 대학 방문 및 협정 체결
- 20. 한국문화교류재단 중국유학생 장학금 대상자 선정
- 부산외대-하나산업사 협정식
- 23. 부산외대-이성수한의원 협약 체결
- 30. 중남미지역원 제37회 초청강연회
- 12. 3. 부산외대 중남미지역원, 서울대 라틴아메리카 연구소 공동주관
- 4. 순다외대 한국어 단기 과정 개강식
- 6. 제10회 홈커밍데이(Homecoming Day)
- 7. 순다외대 한국어 수업 단기과정 수료식
- 8. 기장군 청소년 글로벌 뉴리더프로그램 수료식
- 11. 중남미지역원 제17차 콜로키엄 개최
- 14. 제17기 외성 해외문화체험단 발대식
- 18. 중남미지역원 2012 협동연구 학술대회 개최
- 2013. 1. 3. 2013년 겨울 기장군 청소년 영어캠프 개최
- 4. 2013년 사랑의 연탄 & 내복 나눔 운동
- 2. 6. 2013년 사랑의 떡국떡 나누기 행사
- 19. 2013년도 학군사관 51기 임관, 52기 승급, 53기 입단식
- 20.~ 21. 2013학년도 입학식 및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 21. 북경외대 복수학위제 2기 학위 수여
- 21.~ 22. 2012학년도 제28회 전기 학위수여식
- 22. 2013학년도 제 14회 한국어문화교육원 한국어 교사 워크숍
- 26. 부산외대 중남미지역원 제20차 콜로키엄 개최
- 27. 2013학년도 1학기 신, 편입 외국인유학생 OT
- 3. 14. 부산외대와 (주)파이오니아소프트 산학 협정식
- 15. 해외영어학기제(SAP) 3기 선발자 파견
- 18. 2013년 1학기 글로벌 튜터링 오리엔테이션
- 4. 10. 중남미지역원 제 40회 초청강연회
- 15. 미국 애즈베리대학교 총장 초청 특강
- 26. 중남미지역원 2013 국제학술대회
- 5. 3. 제10회 외국인학생 한국어 말하기대회
- 14. 엑스포뉴스, (주)백스미디어 산학협력 협정식
- 21. (주)COHAS (코하스) 산학협력 협정식
- 제6기 기장군민어학당 수료식
- 24.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와 학술교류 협정식
- 제11회 한일 환경정화운동 실시
- 6. 1. 제10회 전국 일본어 프레젠테이션 및 말하기 대회
- 7. 라오스 수파누봉대학교와 MOU 체결
- 20. 제18기 외성 해외문화체험단 발대식

2013. 6. 25. 부산외대-대전주조 상호협력 협약식
10. 8. 제6회 교내 외국인 한글뿐내기 대회 개최
21. 말레이시아 말라카 주립대학교 자매결연
24. 남산동캠퍼스 점등식
11. 6. (사)한국-브라질 소사이어티와 협정 체결
13. 북경어언대학교 총장단 일행 내방 및 협정 체결
18. 제19회 교내 영어말하기대회 개최
19. 부산외대-(주)태성정밀과의 산학협력 협정식
27. 부산외대-한국무역협회 KITA(경남본부) 산학협력 협정식
12. 6. 중국 흑룡강대학교 부총장단 일행 내방 및 협정 체결
24.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대학 선정
27. 부산외국어대학교, 2013년도 대학기관평가인증 획득
-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청년 고용센터 2년 연속 A등급 선정
30. 글로벌마케터 산학협력 협정식
2014. 1. 6. 동락화학공업사 대표 대학 발전기금 전달
2. 26. 2013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
27. 2014학년도 입학식
3. 11. 부산외대-한국무역협회 산학 협약식
28. 부산외대-금정구청, 남광종합사회복지관 산학협정 조인식
4. 8. 부산외대-시스코 산학 협약식
10. 이민자사회통합센터 현판식
14. 부산외대-이피피인터랙티브, 산학 협정
22. 부산외대-한일문화교류協, 산학협력 협약
5. 26. 일본 오카야마현 기비국제대학과 교류 협정
6. 7. 2014학년도 제11회 전국 일본어 프레젠테이션 및 말하기 대회 개최
7. 1. 사회봉사센터와 금정구자원봉사센터 업무협약(MOU) 체결
17. (주)크레듀 산학협정 체결
9. 19. 유엔협회세계연맹(WFUNA)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26. 인도 KIIT대학교와의 학술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10. 1. 제1회 파이데이아 체임버 콘서트
27. 부산외국어대학교와 일본 (주)케어크리에이트 협약 체결
28. 다문화창의인재양성사업단 지역공동체 동행체제 구축 및 지역민을 위한 다문화 축제 개최
11. 12. 사회봉사센터-와치종합사회복지관 산학협력 체결식
13. 한국과학기술원(KAIST)와 상호 업무협력 협약 체결식
14. 부산외대-부산경영자총협회 산학 협약식
15. 외교학과 창립 30주년기념 정기동문회 개최
20. 주 중국상해총영사 초청특강 실시
21. 글로벌마케터 양성 산학 협약식
26. 부산시 해외인턴취업지원사업 우수대학 표창
27. 부산외대-신성중공업 산학 협약식
12. 3. 부산항만공사와 산학업무 협력 협약식 체결
8. (주)씨알푸드와 상호협력 협약식 및 '외성 글로벌마케터' 양성제휴 계약
9. (사)동남권디자인산업협회와 상호 업무협력 협약식
19. 제20기 외성 해외문화체험단 발대식
30. 와치노인복지센터 협약식
- (주)유니크라미 협약식
2015. 1. 5. 2015년 신년 예배 및 인사회
13. 베스티안 특허법률사무소와 업무협약 체결
22. 부산대학교 법률상담소 협약식 체결
23. 삼성전기(주)와 업무협약 체결
- 중남미지역원-KOICA, 2015년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 약정 체결식
2. 1. KOICA 2015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 선정
4. 양산 상공회의소 협력 협약식 체결
6. 라인업치과와 산학협력병원진료 협약식
13. 남산모터스와 상호 협력 협약식
26.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상호업무 협력 협약식 체결
3. 17. 부산외대 최고국제경영자과정(AMP) 제16기 입학식 거행
18. 제3회 파이데이아 체임버 콘서트 개최

- 19. 남광종합사회복지관 협약식
- 20.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 협약식
- 4. 2. 제2회 아르케자유인문특강 개최
- 6. <E-NET주식회사>와 <일본어창의융합학부> 산학협정 체결
- 10. (주)국제식품과 상호업무협력 협약식 체결
- 14. <중소기업진흥공단> 상호협력 협약식
- 16. 일본 전통 다도실 조성 완료
- 17. <협약식 : 백이안과> 협력병원 진료 협약식
- 5. 1.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선정
- 18. 2015년 봄학기 한국어문화교육원 수료식
- 27. 제8대 총장 취임예배
- 6. 15. 2015년 여름학기 한국어문화교육원 개강식
- 19. 제21기 외성 해외문화체험단 발대식
- 7. 1. 한국연구재단 과학문화융합콘텐츠연구개발사업 선정
- 27. 제11회 부산외국어대학교 총장기 고교동아리축구대회
- 8. 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공기관연계 지역산업육성사업 선정
- 21. 2014년도 후기 학위 수여식
- 10. 1.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지원사업 선정
- 창업진흥원 2015 3D프린터 보급지원사업 선정
- 15. ACE대학 선정 기념 “부산외대 가을음악회” 개최
- 21.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 - 벨헤이븐대학교 로저페롯 총장
- 23. 주일본부산사무역사무소 관학협정 체결
- 27. 대학창조일자리센터 개소
- 28. 부산영상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 11. 4. 동티모르한국어학교와 상호 업무협약 체결
- 10. 한국청소년상담학회와의 업무협약 체결
- 12. 2015 아세안 로드쇼 개최
- 13. 기장군 진로교육지원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 16. 손재림의료재단과의 업무협약 체결
- 17. 삼원FA(주)와의 상호 업무협약 체결
- 12. 10. 부산지방공단 스포윈과의 업무협약 체결
- 동서콘솔(주)와 상호 업무협력 협약식
- 18. (주)오토닉스와 상호 업무협력 협약식
- 23. 부산시설공단과의 업무협약 체결
- 28. 국인터넷진흥원(KISA)과의 업무협약 체결
- 부산교통방송과의 업무협약 체결
- 2016. 1. 15. 설립자 추모 예배
- 2. 미래융합기술연구소 설립
- 1. KOICA 2016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 선정
- 15. 2016학년도 입학식(1)
- 16. 일·학습병행제 IPP사업 선정
- 17. 2016학년도 입학식(2)
-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참사 2주기 추모식
- 19. 2015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
- 24. 부산광역시 배드민턴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 25. 해외취업지원 청해진대학 사업 선정
- 3. 18. 교어사업 선정
- GLE, 글로벌현장학습사업 선정
- 23. 시청자미디어재단부산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 24. 데이터스트림즈와 업무협약 체결
- 31.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 부산은행과 업무협약 체결
- 4. 1. 일본 관동국제고등학교 협약식
- 6. 2016년 대학정보공시 운영협력대학 선정
- 26. 부산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와의 업무협약 체결
- 29. J-BIT사업단, 자유학기제 지원협약 체결
- 5. 2. 소방안전 및 119 구조 구급 기술사업 선정
- 6. 일본 쓰시마시장 본교내방 상호 교류협정 체결

- 2016. 5. 16. 일본소프트웨어협회(IIA)와의 산학협정서 체결
- 17. (주)디즈텍과의 상호 업무협력 협약식
- 6. 22. 학군단, 부산지방보훈청과 협정식 체결
- 7. 11. 중남미지역원 - (주)EC21과 협정 체결
- 8. 10. 2016년 부산시 초중등 관리자 다문화이해교육 직무연수
- 19. 2016 하계 한국어교원양성과정(21기) 수료식
- 2015년도 후기 학위 수여식
- 9. 6. 대한제강(주)와의 상호 업무협약 체결
- 23. 세정나눔재단 지역우수인재 장학금 수여식
- 29. 2016 한국-미얀마 연계성 포럼
-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CORE) 출범식
- 11. 2.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조직위원회와의 업무협약 체결
- 3. 제3회 지역민을 위한 다문화축제의 밤
- 18. 설립자 흉상 제막식
- 2017. 2. 8. 2017학년도 제36회 입학식
- 9. 설립자 초상화 제막식
- 17.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참사 3주기 추모식
- 윤현철 케이알텍(주) 대표 명예박사 학위 수여
- 3. 9. 제18기 최고국제경영자과정 입학식
- 20. 동남아통합행정실 공식 출범
- 23. IPP형 일학습병행제 우수대학 선정
- 28. 2017년 청해진대학 2기 연수생 발대식
- 4. 11. 동아대와 연계협력을 위한 협약식 체결
- 20. 일본 동경지역 부산외대 동문회 개최
- 26. 제1기 외국인유학생회 발대식
- 5. 1. BUFS-Global 학생봉사단 발대식 개최
- 2. 부산시교육청과 다문화교육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 18. IPP형 일학습병행제 산학 협의회 개최
- 24. 한국프로골프협회 산학협력 협정 체결
- 29. AMP 총동문회 정창교 회장 취임식
- 30. '길 위의 인문학' 사업 선정
- 31. 제1차 동남아교육방법 국제워크숍 개최
- 6. 1.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육성사업 선정
- 폴란드 야기엘로니아대학교 MOU 체결
- 8. 미얀마 만달레이대학교 학술교류협정 체결
- 29. 시·도교육청 개발 인정도서 감수사업 선정
- 7. 11. 부산가톨릭대와 도서관 상호협력 협약식 체결
- 18. 잇츠한불과 MOU 체결
- 26.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육성하는 '2017 지역 스포츠 클럽' 사업 대상지로 선정
- 8. 6. '2017 동북아시아 청년리더스 포럼' 유치 및 개최
- 8. 유학플래너닷컴과 EBK 공식 파트너십 체결
- 16. 후쿠오카현 무나카타시·JR큐슈고속선 국제교류 협정 체결
- 9. 1. 'K-MOVE 취업연수과정' 실시
- 20. 영화배우 '이마뽀'씨 초청 다문화특강
- 22. Royal Academy of Cambodia 학술교류 협정 체결
- 10. 13. 구글 최연소 임원 김태원 상무 초청 특강
- 16. 유엔세계식량기구(WFP) 최성희 사무관 강연
- 11. 4. 2017년 GLE 20주년 기념행사 개최
- 7. 2017학년도 비교과 DAY 개최
- 10. 쓰시마(対馬) 환경정화봉사활동 참가
- 11. 제 17회 전국 대학생 일본어 경시대회 참여
- 일본취업합동박람회 in 부산
- 제5회 BUFS 다문화포럼 개최
- 14. 제4회 지역민을 위한 다문화축제의 밤 개최
- 27. 부산주재 일본총영사 미치가미 히사시 초청 강연
- 12. 6. 제1회 해외취업박람회 개최
- 12. KOICA 다년간 대학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 선정
- 2018. 1. 2. 2018년 신년 예배 및 신년인사회 개최

- 24. '대학소통위원회' 회의 개최
- 2. 23. 제33회 2017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
- 26. 제7대, 제8대 정해린 총장 이임식
- 제9대 정기영 총장 취임식
- 3. 2. 제37회 2018학년도 입학식
- 15. 2018학년도 1학기 유학생 환영식 개최
- 4. 7. 환경정화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 실시
- 5. 18. 대마도 환경정화 봉사활동 실시
- 29. 미국, 베트남지역 세종학당 추가 운영
- 6. 1. 제15회 전국 대학생 일본어 프레젠테이션 대회 개최
- 2. 2018 일본취업박람회 개최
- 28. 제12회 외성챌린지 필리핀 해외봉사 실시
- 8. 4. 특수외국어지원사업 선정
- 10. 2018 탈북학생 진로직업 희망캠프 개최
- 23. 대학기본역량진단 '자율개선대학' 선정
- 9. 28. 세계생활체육연맹 업무협약 체결
- 10. 4. 제2호 해외영어연수센터 필리핀 개원
- 18. 2018년 교육기부 우수기관 선정
- 22. 부산외국어대학교-한국생산성본부 산학협력 협약 체결
- 23. 2018-2학기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 제1주차 시민인문강좌 개최
- 27. 2018년 제11회 외국인학생 한국어 한마당
- 11. 2. 미국 블룸필드대학 총장 우리 대학교 내방
- 3. 외검회, 시민체전·슈퍼컵 성적 우수
- 9. 한국어학당, 2018 가을학기 UCC 공모전 발표회
- 11. 외검회, 부산시대회 우승
- 14. 이동원 교수 "대한민국 지식서비스 대상 장관상" 수상
- 15. 일본 사가현립카라즈세이쇼고등학교와 교류회
- 16. '제11회 전국 대학생 중국어 프레젠테이션 대회' 성료
- 17. 한국어학당, 2018 가을학기 수료식
- 22. 지역사회 독거노인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눔' 활동 펼쳐
- 부산외대 학생팀, '제2회 BIFEC' 우수상, 아이디어상 수상
- 키르기스스탄 소재 KEIIN International Institute 총장 내방
- 독일 FOM 대학 국제교류처장 및 일행 내방
- 제6회 부산외국인유학생 예능경연대회
- 27. 2018학년도 특수외국어 경시대회 개최
- 29. '2018 국제 학술대회' 개최(Intercultural Communication and Foreign Language Education)
- 30. '2018 부산시민 영어교육 정책수립 토론회' 개최
- '2018 연합대학 학습UCC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등 수상
- '야(夜)한 독서' 행사 성료
- 12. 1. 권선홍 명예교수, '2018년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상' 논문상 수상
- 2. 학습UCC 경진대회 최우수상
- 6. 베트남어 해외 전문가 초청강연회 개최
- 지역주민을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 펼쳐
- '2018년 ProCon 독서토론클럽 4기' 수료식 개 최
- 7. '2018학년도 LINC+ Day' 행사 성료
- 11.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언어적응교육 콘텐츠 개발
- 14. 2018년 대학 교양교육 컨설팅 우수 개선 대학 선정
- 18. (주)케이알텍, 부산외대에 발전기금 일천만 원 기탁
- 19. '2018년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 교육' 실시
- 21. 부산외대 '소망장학금' 수여
- 부산외대 발전기금재단, '행복나눔장학금' 수여식 개최
- 24. 성우하이텍과 전기차용 배터리팩 및 에어컨디셔너 핵심기술 개발 추진
- 27. 자기주도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성료
- 31. 한국어학당, 2018년 겨울학기 문화체험
- 2019. 1. 2. 'Let's Go, 기장군 English Camp'
- 10. 지역 강소기업 탐방 활동
- 자기주도 학습 '화려한 비상' 성료
- 15. 제11기 외성 글로컬마케터체험단 파견

2019. 1. 18. 부산외대 다문화사업단, ‘당연한 게 어딴?’ 발간
23. 2018학년도 2학기 BUFS 학습활동 공유에세이 공모전 시상식 개최
24. 무역·물류 사무직 희망학생 15명 베트남 파견
28. 졸업생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One-Stop 취업아카데미’ 운영
30. 2018학년도 동계 해외영어학기제(SAP) 학생 파견
2. 9. 중남미지역원,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교육봉사 펼쳐
11. LINC+사업단, 파라다이스호텔과 ‘외국어 디지털 교재’ 앱 공동개발
13. 부산외대, 경주마우나오션리조트 참가 5주기 추모식 거행
20. 주한 중국대사관 리홍 신임 교육참사관 특강
22. 부산외대 졸업 김유정씨, 졸업식 날 발전기금 500만 원 쾌척
- 2018학년도 전기 외국인 유학생 졸업식 개최
- 2018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 개최... 1,500명 졸업
- 기초학업능력 향상을 위한 명저읽기평가시스템 도입
- 제19대 최고국제경영자과정(AMP) 수료식 개최
27. 중국학부, 사진과 함께 읽는 ‘차이나 키워드 100’ 출간
- 2019학년도 입학식 및 Global Dream 예비대학 개최
- 부산외대-전북대와 특수외국어 관련 학술교류 협정
3. 2. ‘세계 일본어 토론 챔피언십’ 우승
5. KF글로벌 e-스쿨 한국어교육사업 선정
6. 동래문화원과 특수외국어 실용강좌 운영 협정 체결
7. 해외 현지학교 한국어교원 파견사업 2년 연속 선정
9. 제5회 다문화가정 대표자 간담회 개최
14. 27개국 304명 신입 외국인 유학생 환영식 개최
19. 일본 (주)호시노리조트와 산학협력 협약 체결
20. 세계생활체육연맹 한국위원회와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 부산문화재단과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25. 사하문화원과 특수외국어 실용강좌 운영 협정 체결
26. 일본 오사카 긴키대학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협정 체결
28. 해외 한국어 교원 파견사업 2년 연속 부산외대 선정
- IPP사업단,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 발대식 개최
- 2019년 청해진대학 발대식 개최
29. BUFS 글로벌봉사단, ‘제5회 환경정화 및 생태복원 봉사활동’ 실시
4. 1. 특수외국어교육원과 (주)파크랜드 간 산학협력 업무협정 체결
3. 부산외대 정기영 총장, 백양고 학생들을 위한 특강 진행
- 정기영 총장, 백양고 학생 대상 특강 진행
8. 부산외대, 정부 지원으로 ‘한-인니’ 지역 전문가 키운다
- 가자마다대학과 한·인니 탄뎀형 지역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선정
- 독일 보쉬 재단(Bosch-Stiftung), 국제 학술세미나 개최
10. 부산화장품기업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12. 제20기 최고국제경영자과정(AMP) 춘계워크숍 및 원우회 창립총회 개최
16.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와 사회공헌 협약
23. 부산YWCA하나센터와 상호 업무협약 체결
24. 2019학년도 성지학원 부활절예배
- IPP사업단 안중영 교수, 일학습병행 우수사례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25. 전국 열린대학교육협의회, 7대 회장으로 정기영 부산외대 총장 선출
26. ‘이순신리더십연구회 부산아카데미’ 세미나
- 2019년도 태국 현지학교 한국어교원 파견 발대식 개최
27. 제4회 외국인 유학생 체육대회 개최
- 글로벌봉사단, 제2회 기장바다마라톤 대회에서 봉사활동 펼쳐
5. 2. 일본 IT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취업캠프 개최
3. 남평종합사회복지관과 상호 업무협약 체결
8.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부산외대와 업무협약 체결
9. 최고국제경영자과정 개설 20주년 기념 김부겸 국회의원 특별강연회 개최
- 2019년 부산·경남 대학일자리센터 연합 해외취업캠프 개최
11. 제15회 부산외국어대학교 총장기 교교동아리 축구대회 개막
13. 수영문화원에 아세안 언어교육 확산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
14. 2019 주요국가 학생 초청연수사업 위탁기관 선정
- 부산외국어대, ‘2019년 외성순찰대’ 발대식 개최

15. 특수외국어 실용 강좌 협약식 개최
18. 라틴아메리카 문화 공감 행사 '중남미 GO' 개최
20. 육군 53사단-부산외대, 함께하는 학생예비군 훈련  
태국 중등학교 파견 한국인 교원 연수  
성년의 날 맞아 독립선언서 필사 캠페인 진행
22. 동남아지역원, '2019년 국제 학술대회' 개최  
부산외국어대, 2019학년도 LINC+사업단 출범식 및 동아리 발대식 개최  
대학일자리센터 해외취업캠프, 부산·경남 9개 대 연합
24. 부산외대, 'BUFS 글로벌 시(詩) 낭독 콘서트' 개최
27. 브라스테크·에어빔 등 참가 '2019 부산 청년 일본취업 박람회' 개최  
반갑다! 한-아세안센터, 30주년 맞아 '한-아세안 저널' 창간  
LINC+사업단 3차년도 참여자 2단계 출범식
28. 허정재 대표, 부산외대 AMP 총동문회장 취임  
정기영 부산외대 총장 "동남아시아 진출 졸업생들 현지 주력으로 성장 뿌듯"
- 6 4. '제13회 Ms/Mr. 스마일 선발대회' 성료  
부산외국어대, 이계문 신용회복위원장 금융특강 개최  
신남방정책 전문가 초청 강연
5. 부산외국어대,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법 특강 프로그램 성료  
부산외국어대, 제16회 전국 대학생 일본어 프레젠테이션 대회 개최  
부산외대 학생들, 울산 방어진 일대에서 어촌봉사활동 펼쳐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15개 사업단 선정
7. 일본 사회복지법인 치매관리 학술 교류와 인력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봉사단, 부산 온천천 일대에서 환경개선 봉사활동 펼쳐  
형가리 유람선 실종자 대책위 구성
10. 2019 대학일자리센터 우수 컨설턴트 총장 표창 수여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념 초청강연회 개최  
'소망장학금' 수여식 개최
12. 진광호 부산외대 교수, 대한중국학회 우수 논문상 수상
13. 다문화연구소, 2019년 춘계학술대회 성료  
유엔평화기념관과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부산가톨릭대-부산외대, 일본 사회복지법인과 업무 협약  
부산외대 중남미지역원, 구서여중 학생들을 위한 세계시민의식 강연 개최  
부산외국어대,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다문화 페스티벌 개최
18. 신남방정책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2019 자원봉사 체험수기 공모전 성료
19. 특수외국어교육원, 국제영어대학원과 베트남어 등 학술교류 협정 체결
20. 지역주민들을 위한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24. 'LINC+사업 성과확산 산학협력 워크숍' 개최  
제7회 총동문회장배 골프대회 성료
7. 1. 캄보디아 현지에 파견된 해외봉사단(외성첼린지프로그램) 파견  
6. 하계 금정구 어린이 영어캠프  
10. 2019학년도 1학기 창업동아리 최종보고회 성료  
11. 2019학년도 1학기 캡스톤디자인 창의적 프로젝트 공모전 실시  
12. 캄보디아 현지에 파견된 해외봉사단(외성첼린지프로그램) 귀국  
15. 해양 플라스틱 제로 캠페인 실시  
16. 부산 금정구, 글로벌 인재 양성에 힘써... 4박 5일 '어린이 영어캠프' 운영  
17. 창원중앙고 제3회 이색학과 박람회 참여(G2영·중융합학부)  
서면 뉴라인성형외과와 업무협약 체결
19. 2019년 주요 국가 학생 초청 연수 성료
26. 부산외국어대-전북대 공동주최 동남아 언어 여름캠프
28. 글로벌인문융합교육원, 알제리 대사관 및 KOICA에 학생단 파견
29. 하계 기장 어린이 꿈나무 영어캠프
8. 7. 부산지역 '유·초·중등 다문화교사 직무 연수' 개최  
12. 한국어학당 여름학기 수료식 개최  
신남방 국가 학생 초청 연수 프로그램
13. 지역주민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종료

2019. 8. 16. 초·중등교사 영어능력함양형 심화연수 수료식
20. 日 오사카한국교육원 및 민단오사카본부와 상호 업무협약 체결
23. 제34회 2018학년도 후기 학위 수여식
29. 대학혁신단, 마이다스아이티 전문가 초청 특강 개최
30. 국제통상연구소, 금정구청과 금정아고라 포럼 개최
31. 제6차 다문화가정 대표자 간담회 개최
9. 2. 고교협력실, 학산여고와 교과중점과정 운영 협약 체결 및 ‘국제사회의 이해와 글로벌 인재’ 강의 개설
9. 2019학년도 2학기 신입 외국인 유학생 환영식 개최
10. 교원 사령식
- 지구촌캠퍼스,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전통문화 체험 한마당 행사
16. 창업교육센터, 2019학년도 외성 창업사관학교 발대식 개최
17. 특수외국어교육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기념 초청강연회 개최
- 교수학습지원센터,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와 캡스톤디자인 교과 지원 MOU 체결
- 한국어문화교육원, 외국인 학생을 위한 K-Food School 참가
19. 지중해지역원, 튀니지 마누바 대학 페이잘 웨리프 교수 ‘지중해지역과 아프리카에서의 튀니지 역할’ 초청 특강 개최
- 비교법연구소, 행정안정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국가재난관리체계의 이해와 대테러 대응 전략’ 학술 세미나 공동개최
20. 중남미지역원, 아시아 최초 ‘멕시코학 국제학술대회’ 개최
- 대학혁신지원사업 실무자 성과관리 워크숍 개최
21. 다문화연구소,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학회 2019년 제1차 콜로키움’ 개최
23. 2019년 2학기 한국어도우미 오리엔테이션 개최
24. 사회기여센터, 아시아경제 조영철 편집부장 ‘박항서 신화를 수출한 청년 CEO’ 글로벌 챌린지 특강 개최
25. LINC+사업단, 부산광역시와 산학 R&D 정책 포럼 개최
- 인도학부, KOTRA와 K-MOVE 한국인재 맞춤형 POINT 상담회 개최
26. 국제교류처, TPO(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관광로드쇼 참가
- 중앙도서관, 전자정보박람회 개최
27. 사회기여센터, 부산광역시 이상태 공보담당관 초청 글로벌챌린지 특강 개최
- 국제관계연구소, ‘동아시아 지역인식과 해양분쟁 : 역사적 기원과 현재의 전략’ 기획학술회의 개최
10. 5. 대학생 일본어 디베이트 대회 일본어창의융합학부 전국 우승
7. 특수외국어교육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념 제3차 초청강연 개최
11. 한국어문화교육원, 제12회 외국인학생 한국어 한마당 개최
- 한국어문화교육원 연극동아리 ‘NOLZA(놀자)!', 세계 한국어 영상 한마당 대상 수상
15. 국제교류처, 중국인 유학생 3명 대상 장학증서 전달
- 사회기여센터, 정미영 금정구청장 초청 글로벌 챌린지 특강 개최
16. 창녕군과 ‘다문화학생 모국어특화 진로 캠프’ 운영
- IPP사업단, 일학습병행 참여기업체 CEO초청 산학간담회 개최
21. LINC+사업단,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산학협력 정책포럼 개최
23. 스포츠산업학부, 2019년 23세 이하 아세아펜싱선수권대회 개인전 3위, 단체전 2위
31. 2019년 청년 예술교육 해커톤대회 창업교육센터 참여학생 장려상 수상
11. 1. 동남아 지역원, 한-태 소사이어티 개최
- 외교전공, 부산시 대학생 모의회의 경연대회 4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
2. 임베디드IT학부, 지역우수기업 3개사 기업탐방 실시
5. 특수외국어사업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념 제4차 초청강연회
- 스포츠산업학부, 전국 회장기 대학배드민턴연맹전 우승 차지
9. G2(영·중)융합학부, ‘대학생 중국어 말하기 대회’ 대상 수상
14. 교육사업단, 창녕군과 다문화가정 학생 모국어 특화 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이탈리아언어문화전공, 김경석 前 주 에콰도르 대사 초청 특강 개최
15. 중국학부, 전국 대학생 중국어 프레젠테이션대회 개최
- 교수학습지원센터 지원 ‘#필름’팀, 2019연합대학 학습UCC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25.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 초청 토론회
- 나라폰 찬오차 태국 총리 부인 초청 간담회